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1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2월 16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집합투자규약상 설정가능좌수)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02-501-7707)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금융위원회
11.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신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 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집합투자기구 투자시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수익률]

II.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II. 요약 재무정보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지축」**으로서,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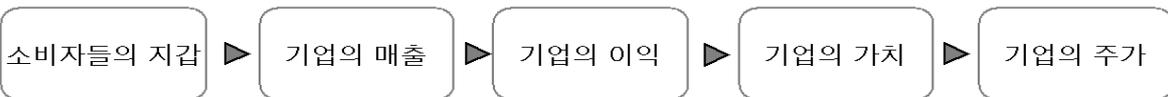
또한, 주식의 '매일의 보유비율'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상입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 명칭: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2) 주요 투자전략: 주식에의 투자 (투자비율: 70% 이상)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투자철학] => “일등기업 투자전략“



주식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에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각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을 말하며, 일등기업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기 마련이고 기업의 매출증가는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이익증가는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주가는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산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호황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게 되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안 좋은 기업부터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 불황이 끝나고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생존 기업들은 퇴출 당한 기업의 몫까지 차지하여 그 이익을 과거보다 많이 향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등기업의 시장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 강화된 시장 지배력은 더욱 많은 이익으로 이어지며, 주주에게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 일등기업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정의 :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내 경쟁력이 높은 기업

3.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한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의 규정에 의하거나 금융위원회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 투자위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5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시장의 경제여건 변화와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글로벌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분류]



5.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5.01.31.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최광욱	1970	책임 운용역	33개	17,821억원	- 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CIO (전무이사) - 현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운용 - 에셋플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팀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노기호	1984	부책임 운용역	5개	553억원	- 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국내운용팀 - HMC투자증권 - Indiana University, Kelley school of business

주)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C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e				
종류 S-T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C	종류Ce	종류S-T	
집합투자업자 보수	0.5000	0.5000	0.50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5600	0.1700	0.1600	
신탁업자 보수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회사 보수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총 보수·비용	1.1100	0.7200	0.7100	
기타비용(모 집합투자기구)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합성 총 보수·비용(TER)	1.1100	0.7200	0.7100	
증권거래비용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기타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기타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7)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종류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C	113,775	358,676	628,679	1,431,050
종류 Ce	73,800	232,655	407,792	928,248
종류 S-T	72,775	229,423	402,128	915,356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 세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환매	* 환매를 청구한날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환매를 청구한날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4. 전환 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	---------

해당사항 없음